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5.27)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옥]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5.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5. 13.

2. 개정이유

-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일부제한구역의 가구간 거리를 확대 조정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주거밀집지역의 가구간의 거리를 확대 정의함 (안 제2조제5호)
- 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거리 조정함 (안 별표 1)
 - 소, 말 : 100m ⇒ 200m
 - 젖소, 사슴, 양 : 250m ⇒ 300m
 - 돼지, 개, 닭, 오리 : 500m ⇒ 800m
-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 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대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마.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신설함 (안 제10조, 별표2, 제12조)
- 바. 기록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600백만원(2014년 예산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4. 8. ~ 4. 29.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일부 제한구역의 가구간 거리를 확대 조정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주거밀접지역의 가구간의 거리를 50m에서 100m으로 확대하는 규정과
 - **안 제3조**에서의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거리를 소, 말은 100m⇒200m, 젖소, 사슴, 양은 250m⇒30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800m로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청정 거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납부방법, 처리량 관리와 사용료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밀집지역 가구간거리 확대와 가축사육일부 제한구역을 조정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 삭제 <2011.7.2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는 것

3.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25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